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6월 5일

나.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

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지원과 중복되는 교통카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 내용 중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28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6. 19.

제안자: 이규선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지원과 중복되는 교통카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 내용 중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내용 중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 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 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 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 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 진 반납에 따른 지원) ----- ----- ----- ----- ----- ----- ---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
----------	-----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일

발의자 : 권영식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입법예고(2019. 5.31. ~ 6. 5.)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